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333호

공시송달공고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2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점유자	점유지	점유면적	연간사용료	부과기간	변상금 예정금액
주식회사 라*브포스트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11-3, 1층 일부	건물 23.10 토지 21.79	2,981,978원	2020. 4. 1.~ 2020. 10. 7.(190일)	1,862,710원

※ 산출 서식: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120%

4. 공고기간: 2021. 8. 27. ~ 2021. 9. 10.
5. 의견제출 기간: 2021. 9. 10. 까지
※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고지할 예정이며,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
6. 의견제출 내용
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다.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7. 기타문의 안내: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9층, 전화 02)6967-9223, 팩스 0505-005-1101)

2021년 8월 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